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16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신정훈
윤준병·김교홍·박수현
이원택·강득구·이병진
문대림·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3장에 제3절(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선택직접지불제도

제16조의2(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2. 밀원수(蜜源樹)를 조립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3. 산림 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임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③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인등의 소득안정, 우량 목재 생산,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 1. 2. (현행과 같음) 3. <u>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u> <u>제3절 선택직접지불제도</u> <u>제16조의2(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u>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임산물

<신 설>

을 생산하는 산업에 종사하
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
불제도

2. 밀원수(蜜源樹)를 조림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

3. 산림 지역의 경관을 형성·
유지·개선하기 위한 임산물
을 생산·관리하는 임업인등
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③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인등의 소
득안정, 우량 목재 생산, 탄소
중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
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
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선택형 공익직접지불
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제1
6조의2에 따른 선택형 공익직
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
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
을 갖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
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
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